

순천대학교 장학금지급 및 운영규정

제정 1982. 3. 1.	개정 1986. 11. 27.
개정 1988. 10. 24.	개정 1992. 8. 20.
개정 1995. 2. 8.	개정 1995. 3. 29.
개정 1996. 6. 24.	개정 2001. 11. 8.
개정 2003. 5. 1.	개정 2005. 8. 3.
개정 2007. 3. 21.	개정 2007. 6. 26.
개정 2013. 3. 8.	개정 2018. 3. 30.
개정 2018. 9. 12.	개정 2019.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의 지급

제2조(기금)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조성한다.

1. 등록금 재원장학금
2. 개인 및 단체의 기탁장학금
3. 그 밖의 장학금 <개정 2018. 3. 30.>

제3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제2조의 기금 등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 3. 30.>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순천대학교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조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순천대학교 (이하"이 대학교"라 한다.)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성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6. 6. 24>

1. 학업성적 우수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그 자녀 <개정 2007. 3. 21>
3.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4. 체육특기자.
5. 삭제.
6. 삭제.
7. 장애인
8. 가족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신설 2005.8.3.> <개정 2018. 3. 30.>
9. 단과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선정방법) 장학금 수혜 후보학생은 소속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정한다.

제7조 (자격상실)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 휴학·퇴학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종료 다음 학기부터 1학기간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직접수혜 보고) ①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그 사실을 학부(과)장을 거쳐 해당 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장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수 장학금

제9조 (특수장학기금의 설치) 이 대학교의 특기자에 의한 개인 또는 단체명 의의 장학기금을 둘 수 있다.

제10조 (특수 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금전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기금설정인의 동의 없이는 전용할 수 없다.

제11조 (지급조건) 장학금의 지급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규정의 지급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금설정인의 특정 지급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4장 수석합격 장학생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5장 장학위원회

제13조 (목적) 이 대학교 장학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 장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6. 6. 24>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96. 6. 24>

1. 장학금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조성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1996. 6. 24>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 3. 29, 2019. 3. 20.>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 <개정 2019. 3. 20.>

③ 위원은 교무과장·학생지원과장·재무과장·취업지원과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단과대학 별 1명)과 학생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6. 26, 2013. 3. 08, 2018.9.12., 2019. 3. 20.>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신설 1996. 6. 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6. 6. 24>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6. 6. 2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6. 6. 24>

제1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학생지원과 장학담당주무로 한다. <개정 1996. 6.24>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8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6.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5조 제7호 장애인 장학금은 2003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8.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3호, 2018.9.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